

의안번호	2217535
의 퇴 인	김은혜 의원
회 답 일	2026. 5. 6.
추계번호	26C1657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(이하 “보상위원회”)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(이하 “재심위원회”) 위원 수 증원 시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가재정소요는 총 10억 8,000만원(연평균 2억 1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(안 제7조제2항)	216	216	216	216	216	1,080	216

주: 현행법 제15조제2항¹⁾에 따라 재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제2항 (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)	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7조제7항 (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)	보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	재량규정

1) 제15조(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)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7조 및 제9조 중 “보상위원회”는 “재심위원회”로, 제7조제3항 각 호 중 “5년 이상”은 “7년 이상”으로 본다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제2항 (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)	○	○ 개정안은 보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기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2	안 제7조제7항 (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)	—	○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보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경우,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기존의 자문수당 ²⁾ 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보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이며, 현행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심위원회 위원 수도 증가함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2)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에 따르면, '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보상위원회 자문위원(3인)의 자문 수당(단가 30만 원, 연 48회 가정)으로 총 43,200천 원이 편성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보상위원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³⁾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구성 확대(15명 → 30명)에 기인하며, 본 추계에서는 증가 인원, 회의 횟수 및 회의수당 단가의 곱으로 산출
 - (위원 수 증가) 보상위원회 증원(15명)에 더해, 현행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심위원회 위원 수도 15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
 - 연도별 위원 수 증가는 보상위원회 15명, 재심위원회 15명으로 총 30명임
 - (회의 횟수) 질병관리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위원회별 회의는 월 2회로 가정
 - (회의수당 단가)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중 '26년 예산안 산출내역의 회의수당을 준용하여 위원 1인의 회의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 하며, 추계기간 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0억 8,000만 원으로 추계

[표 2]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 수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위원 수 증가(명, A)	30	30	30	30	30	-	-
회의 횟수(회, B)	24	24	24	24	24	-	-
회의수당 단가(백만원, C)	0.3	0.3	0.3	0.3	0.3	-	-
추가재정소요(백만원, A×B×C)	216	216	216	216	216	1,080	21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'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위원회·조사반 운영에 504백만원이 배정됨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존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